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사방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수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방사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사방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“사방협회”의 명칭을 “한국치산기술협회”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사방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8022호, 2021.4.13. 공포, 2021.10.14.시행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협회 명칭 변경(안 제21조의2조)

- “사방협회”의 명칭을 “한국치산기술협회”로 변경

나.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기관 변경(안 별표 2의 제3호다목)

- 안전진단 기관에 “한국치산기술협회”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 중 “사방협회”를 “한국치산기술협회”로 한다.

별표 2 제3호다목 중 “안전진단 기관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안전진단 기관

1) 협회

2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
진단 실시기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.10.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2호 중 “사방협회”를 “한국치산기술협회”로 한다.

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4호 중 “사방협회”를 “한국치산기술협회”로 한다.

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제3항, 제20조의2제2항,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20조의4 본문 및 제45조제2항 중 “사방협회”를 “한국치산기술협회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타당성평가의 위탁) 시· 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 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 성평가 업무를 법 제22조의2제1항 에 따른 <u>사방협회</u> 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에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시·도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	제21조의2(타당성평가의 위탁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국치산기술협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사태방지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271